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23 발의연월일: 2020. 7. 23.

발 의 자: 안호영·송옥주·최종윤

양이원영 · 노웅래 · 윤미향

아 시비 · 송갑석 · 김철민

김윤덕 · 임종성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)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 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.

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어 사실상 생활안정자 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대상자(49만명) 의 15.3%(7.4만 명)에 불과함.

아울러, IT산업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으로 종속성과 자율성이 병존하는 고용형태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임. 이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 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95조의2). 법률 제 호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5조의2의 제목 중 "특수형태근로종사자"를 "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"으로 하며,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해당 사 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
- 2.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 (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95조의2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제95조의2(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한 특례) 「산업재해보상보 등에 대한 특례) 다음 각 호의 험법」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-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는 제2조제1호에도 불 구하고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-----. <단서 삭제>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. 다만,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신 설> 1.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 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 하며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 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2.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 <신 설> 4조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(근로자를 사용하는 사

업주는 제외한다)